

『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선우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조례의 적용범위(안 제3조)
-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공사·시설·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- 표지판의 설치장소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설치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6. 26. ~ 7. 2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자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,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,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기관위임사무일 경우는 제외하였음.
-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표지판, 시설표지판, 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표지판에 보조사업명, 보조금 지원기관,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등을 기재하여 시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음.

-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·철거·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음.

○ 검토 결과,

-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은 없으나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의도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,
- 표지판 관리 실태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것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복 및 편중 방지,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,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제고와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